



개인연금의 이해(3):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1994년 비과세 개인연금저축(이하 개인연금)이 도입되었고, 2001년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금우대 연금저축(이하 연금저축)이 도입됨.
- 개인연금은 저축 장려와 개인의 풍요로운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994년 6월에 도입된 연금형 저축상품으로 연금소득공제와 함께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징이 있음.
 - 개인연금은 2001년 연금저축의 도입으로 신규 가입이 중지되었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속 불입이 가능하고 종전의 소득공제기준 및 비과세 등의 기존세제 적용이 가능함.
 - 개인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격, 납입기간, 납입한도, 지급조건 등의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며,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간 납입금액의 40%(72만 원 한도)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.
-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험사, 은행, 자산운용사, 우체국 등에서 판매된 연금상품으로 종전의 개인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나,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특징이 있음.
 - 또한, 각 금융권역별 보험형과 신탁형,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등으로 상품을 설계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주보험에 특약형태로 보장성보험을 부가할 수 있음.
 - 연금저축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이지만 실적배당형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제외됨.
 -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, ②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일 것, ③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, ④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,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연금일 것(동법 시행령 제80조의2)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.

- 세제혜택은 연간 400만 원* 범위 내에서 연간 납입금액의 100%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연금수령 시 소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해 5.5%를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음.

*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기여액을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

- 다만,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, 퇴직연금, 연금저축의 연금소득 합산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, 이를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됨.
-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저축불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,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소득공제를 환급(해지금액의 22%를 기타소득세로 부과)해야 함.

■ 종전의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은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으로서 적격요건, 세제혜택 제공, 취급 금융회사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음.

- 그러나, 연금저축은 <표 1>과 같이 종전 개인연금과 달리 연금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나 연금수령 시의 세제혜택이 축소되었으며, 가입대상 확대, 취급기관 확대 등의 차이점이 있음.

<표 1> 종전의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비교

구 분		개인연금	연금저축
가입대상		• 만20세 이상 국내거주자	•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
취급기관		• 보험회사, 은행(신탁), 투신운용사, 우체국(보험), 농·수협 단위조합(생명공제)	• 보험회사, 은행(신탁), 투신운용사, 우체국(보험), 농·수협 단위조합 및 중앙회(생명공제), 증권투자회사, 신용협동조합중앙회(생명공제)
저축기간	적립기간	• 10년 이상 만55세 이후	• 좌동
	연금지급기간	• 적립기간 만료 후 5년 이상	• 좌동
가입한도		• 분기당 300만 원 한도	• 좌동
소득공제	범위	• 연간 납입금액의 40%	• 연간 납입금액의 100%
	한도	• 72만 원	• 400만 원
이자소득세		• 비과세	• 연금소득세(5.5%)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
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		• 이자소득세(15.4%) 부과	• 기타소득세(22%) 부과
5년 이내 중도해지 시		• 소득공제 추징(납입금액의 4%, 연간 72천 원 한도)	• 납입금액(연간 400만 원 한도)의 2% 해지가산세 부과
근거법		•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	•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
기타		• 2000년 12월 말까지 가입	• 2001년 2월 1일부터 취급